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소음방지
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음대책지역이 지역현실에 맞게 지정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을 정할 때 단독주택의 경계 또는 촌락의 생활 형태 및 하천·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및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요건을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표”를 “제2항, 제3항 및 별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·고시할 때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
1. 도시지역: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
2. 비도시지역: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·도로 등의 지형 지물의 경계

③ 제1항, 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2조제2호 중 “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”를 “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소음대책지역의 지정·고시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소음대책지역의 지정·고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·고시할 때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 1. 도시지역: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2. 비도시지역: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·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③ 제1항, 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④ ----- 제2항, 제3항 및 별표----- -----
<u><신 설></u>	
② 국방부장관은 <u>별표</u> 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는 경	

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
시해야 한다.

1. · 2. (생 략)

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
지정·고시를 했을 때에는 해당
구역에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
· 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
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
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
라 한다)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
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
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
한다.

④ (생 략)

제22조(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
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(생 략)
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
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
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
이 지나지 않은 사람

3. ~ 5. (생 략)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제4항-----

-----.

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22조(위원의 결격사유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그 집
행이 면제된 날부터 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환경소음팀	
연 락 처	(02) 748 - 5894